

센다이시영주택 입주 모집안내

시영주택 입주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은 **우편접수에 한하며**, 우편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창구·전화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시영주택 신청에는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시영주택 정기 모집은 연 4 회(3·6·9·12 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세대·육아 세대·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수속에 관한 문의처】

공익재단법인 센다이시 건설공사 모집과
〒980 - 0803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초 3-10-10 (센다이시약소 고쿠분초 분청사 2 층)
☎ (022) 214-3604

【시영주택 종류】

시영주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신청은 해당하는 1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센다이시영주택 정기모집 주택일람표」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용 주택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다만, 「단신으로 신청하는 자」는 「센다이시영주택 정기모집 주택일람표」에 단신가(單身可)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가족용 주택

신청자격에 해당하며, 4인 이상 입주하려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기타 주택

고령자 및 가벼운 신체장애자 세대를 위한 주택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하는 자는 다음 (1)~(8)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신청 마감일이 신청자격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센다이 시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근무지가 센다이 시내일 것
신청 마감일 현재 거주지는 주민표, 근무지는 근무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원칙적으로 부부 분할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자 또는 범죄피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자」란...

배우자 폭력상담 지원센터 또는 부인보호시설, 모자생활 지원시설 보호가 종료한지 5년 이내의 피해자와 배우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이나 퇴거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 이내의 피해자, 부인상담소가 「배우자 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증명서」를 발령한 피해자입니다.

※ 「범죄피해자」란 ...

범죄로 인해 지금까지 거주하던 주택에서의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것이 분명하고, 또한

① 범죄로 인해 수입이 줄어 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② 범죄 등으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그 부근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현재 주택에 어려움이 있을 것

- 시영주택 입주신청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시영주택 신청이유(주택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 어느 것인가에 해당될 것
- 입주하는 자의 세대 중에 소유 가옥이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매각 등에 의해 처분한 것이 입주 허가 일까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청 세대의 월 소득액이 기준 범위 이내일 것

소득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십시오.

(4) 과거 시영주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을 것

집세 등의 미납과 주위에 폐를 끼친 행위로 인해 퇴거를 요구 받은 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세대 중 시초손민(市町村民)세·경자동차세·고정재산세·도시계획세 등을 체납한 사람이 없을 것

(6) 신청자 본인이 성인일 것 (결혼한 자는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미성년자로 결혼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자 본인이 공영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을 것 (자녀 결혼 등으로 인한 세대 분리는 제외합니다)

※UR 임대주택(구 공단)·현(県) 공사주택·고용촉진주택·응급가설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자 또는 범죄피해자 등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조직폭력단원이 아닐 것 (동거 예정자도 포함)

【단신 신청자의 자격】

다음 (1)~(12)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자격은 신청 마감일을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 (1) 60세 이상인 자
- (2) 신체장애자수첩 교부를 받은 1급에서 4급까지의 자
- (3)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을 교부 받은 1급에서 4급까지의 자
- (4) 요육수첩(지적장애자수첩)을 교부 받고, 장애 정도가 「A」 또는 「B」라고 기재 되어 있는 자
- (5) 치료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질병 기타 특수한 질병으로, 법으로 정해진 장애복지서비스 수급자증 또는 특수한 질병으로 의료수급자증 교부를 받은 자와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자.
- (6) 전상병자수첩을 교부받은 은급법(恩給法-공제연금법) 별표 제 1 호 표 2의 특별항목 증상에서 제 6 항목 증상까지 또는 동 법의 별표 제 1 호 표 3의 제 1 항목의 증상이 있는 자
- (7) 원폭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후생노동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 (8) 생활보호법에 의한 피보호자 또는 중국 잔류 일본인 등의 원활한 귀국 촉진 및 영주귀국 후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 항에 규정한 지원급부(중국 잔류

- 일본인 등의 원활한 귀국 촉진 및 영주귀국 후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
 법률 부칙 제 4 조제 1 항에 규정한 지원 급부를 포함함)를 받고 있는 자
- (9) 해외에서 귀환자(후생노동장관이 증명한 자)로, 일본에 귀환한 날부터 계산해서 5년 미만의 자
 - (10) 한센병요양소 입소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규정한 한센병요양소 입소자.
 - (11)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자
 - (12) 범죄피해자

★신체상 또는 정신상 현저한 장애가 있어 상시 간호가 필요한 자로, 상시 간호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계층 세대와 재량계층 세대】

- 일반계층 세대(소득이 월 158,000 엔 이하) 란...
 다음의 재량계층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는 모두 일반계층 세대가 됩니다.
- 재량계층 세대(소득이 월 214,000 엔 이하) 란... 다음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소득 제한이 완화됩니다.

신청자 또는 동거자가

- ①신체장애자수첩을 교부 받은 1 급에서 4 급까지의 자
- ②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을 교부 받은 1 급·2 급 자
- ③요육수첩(지적장애자수첩)을 교부를 받은 A 판정·B 판정의 자
- ④치료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질병 기타 특수한 질병으로, 법률로 정해진 장애복지서비스 수급자증 또는 특정질병 의료수급자증 교부를 받은 자와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자.
- ⑤전상병자수첩 교부를 받은 은급법 별표 제 1 호 표 2의 특별항목의 증상부터 제 6 항목의 증상까지 또는 동법 별표 제 1 호 표 3의 제 1 항의 증상이 있는 자
- ⑥원폭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후생노동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 ⑦해외로부터의 귀환자(후생노동장관이 증명한 자)로 일본에 돌아온 날로부터 계산해 5년 미만의 자
- ⑧한센병요양소 입소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규정한 한센병요양소 입소한 자 등
- ⑨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

신청자가

- ⑩60 세 이상의 단신(單身)자
- ⑪60 세이상으로 동거자 전원이 60 세 이상, 또는, 18 세 미만의 세대

【신청에 대한 주의】

신청은 우편 접수만 유효합니다. 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창구·전화접수는 하지않습니다)

신청에서 입주까지의 서류 취득 등에 관한 수수료·우송료 등은 모두 신청자 부담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1) 중복 신청한 경우 (신청은 1 세대 1 통입니다)
- (2) 신청 접수기간 외에 신청한 경우
- (3) 신청서에 부정 기재나 불투명한 점이 있을 경우
- (4) 지정신청서 이외의 신청서로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1 차 심사에서 실격 처리됩니다>

- (1) 신청 자격요건이 부족한 경우

- (2) 단신으로 신청하는 자로 「단신입주 가능 주택」 이외에 신청한 경우
- (3) 목적별 주택에 신청하는 자로, 목적별주택 입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4) 신청자 본인이 공영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자녀의 결혼 등으로 인한 세대 분리는 제외합니다)
 - ※ UR 임대주택(구 공단)·현(縣)공사주택·고용촉진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자 또는 범죄피해자 등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2차 심사에서 실격이 됩니다>

- (1) 가족을 부자연스럽게 나누거나 합하는 경우
 - ★부부를 분할한 세대에서 신청 마감일 현재
 - ①호적상으로 이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②이혼 조정중인 것을 사건 계속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③주민표에서 1년 이상 별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재결합 의지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①~③에서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등은 제외합니다.
- (2)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1차 심사 내용을 포함한다)
 - (예)주민표의 「주민이 된 날」이 신청 마감일보다 늦은 경우는 실격이 됩니다.
- (3)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4) 소득증명서, 주민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5) 세대 중에서 시초손민(市町村民)세·경자동차세·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당선자 중에서 실격자·사퇴자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보결자 중에서 보결 순위에 의해 2차 심사를 실시해 입주 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심사에 합격한 자라도 입주 승인을 취소합니다>

- (1) 입주까지 사이에 신청 자격 및 종류별 입주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
- (2) 지정한 기간 내에 보증금을 납입할 수 없거나, 입주를 위해 필요한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 (3)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세대 전원의 입주가 주민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4) 약혼자와 신청
 - ①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입주 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적한 것을 호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② 신청서에 기재한 약혼자와는 다른 사람과 입적했던 것이 호적등본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 (5) 입주 허가일까지 본인 소유의 집을 매각 등에 의해 처분한 것을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6)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입주하려고 했을 경우

【집세·공익비 등의 시영주택 규정】

- (1) 보증금
 - ☆입주시 집세 3개월분을 납입해 주십시오.
 - 보증금은 주택 퇴거시(이사 때)에 반환합니다.
 - 단, 집세를 미납했을 경우는 공제합니다. 또한, 퇴거시 수리비용을 공제할 수도 있으며, 부족한 경우는 수리비용 등을 별도로 징수합니다.
- (2) 입주 후의 추가경비
 - ①집세

시영주택 집세는 입주한 세대의 수입과 주택의 입지조건·규모·건축시부터 경과 년수에 의해 매년 결정합니다. 세대의 수입 변동도 집세의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시영주택 집세에는 민간아파트와는 달리 유지·수리 등의 *경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수선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비: 다다미 교체, 열쇠 교환, 더러워지고 손상된 벽면의 수리, 파손된 유리 교체 등의 경미한 수선 및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대시설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

②공익비

주택설비에 있어서 외등·계단등·엘리베이터 등의 유지비용.

금액은 매년 변동되니 양해 바랍니다.

(3) 입주주택의 수리상황

☆모집하는 주택은 신축을 제외하고, 전에 입주자가 반환한 주택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리해 입주하는 것입니다. 신축과 같은 상태가 아니니 양해 바랍니다.

☆모집주택에 욕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욕조·보일러·뚜껑을 포함한 주택 내부는 입주자가 청소해서 소중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반환시에는 최저한의 수리비(다다미 교체·창호지 교환에 상당하는 금액 등)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BS·CS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는 주택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영주택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수입 보고 제출 의무에 대해

☆시영주택에 입주하는 자는 매년 세대의 수입보고서 제출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6월에 제출받아, 다음 년도의 집세 산정 자료로 활용하니 소정의 방법에 의해 반드시 기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보고서 제출이 없는 경우는 통상 집세와 비교해 고액의 집세가 됩니다.

(5) 집세 또는 세금 체납

집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시영주택에서 퇴출합니다.

☆센다이시에서는 제대로 집세를 납입하고 있는 자와 체납하고 있는 자와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집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주택 명도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집세 또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새로운 친족의 동거나 명의 승계 및 주차장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집세 감면

☆신청에 의해 집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공익비, 주차장 사용료, 보증금은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사정에 의해 집세를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담해 주십시오.

(7) 주차장 관련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대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이 없는 단지에서 차를 소유한 자는 주변의 민간 주차장을 계약해 주십시오.

단지 내 유료 주차장은, 계약한 자만 주차장 사용증명서를 발행합니다. 단, 사용료 체납 상황에 따라 발행을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가능한 차량의 크기는 길이 5.0m, 폭 2.0m 이내입니다.

☆주차장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는, 유료 주차장 계약을 해약 하겠습니다.

☆유료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1세대 1대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대 이상의 차를

소유한 자는 주변의 민간 주차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후 이용하십시오.

(8) 주택내 준수사항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시영주택에서 퇴출하겠습니다.

☆단지에서의 원만한 공동생활을 해치는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제외하고,

개·고양이·닭·새·토끼·금붕어 등 애완동물을 사육하지 않습니다. (부지 내에서의 동물을 훈련하는 행위를 포함함)

[단, 신체장애자를 위한 안내견(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노인요양)은 제외함]

☆밝고 살기 좋은 단지생활을 위해 입주자 여러분이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입주자가 참가하는 반사회·자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집적소)와 날짜·시간이 있습니다. (센다이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차는 통로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과 긴급차량에 방해가 됩니다.

(주차장을 계약하여 주차장에 주차해 주십시오)

☆시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 이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체장애자가 허가를 받고 하는 침구·안마 등의 영업은 제외)

(9) 조직폭력단원에 대한 주의점

☆조직폭력단원이 입주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영주택에서 퇴출됩니다.